

제1장

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I. 제도의 의의

1. 개념

-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

2. 제도운영의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자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3. 연혁 및 근거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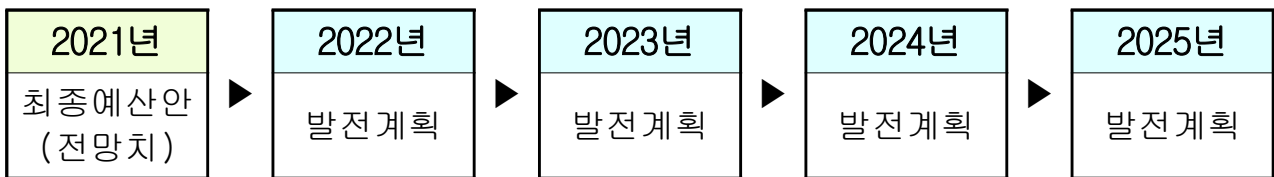
- ('88년) :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
- ('93년) :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- ('95년) :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'05년) : 계획수립 시기 조정(4월 →11월)
- ('07년) :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('15년) : 계획 수립기간 변경(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)

관 련 근 거

- ◆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)
 -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 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자문
- ◆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(예산안 첨부서류)
 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

II.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 계획기간 : 2021 ~ 2025년 (5개년)



□ 계획대상

- 대 상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
- 기 준 : '21년도 최종예산안(잠정계상)을 기준으로 하되,
'22년 이후는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

□ 주요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□ 계획방향

- 「행정안전부 2021~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」(‘20.7.)에 따라 계획 작성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·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「2020~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(‘19.11)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□ 수립 절차

- | | | |
|---|--------|--|
| ① | 행정안전부 | ▪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통보(‘20.7월) |
| ② | 지방자치단체 | ▪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(안) 수립(‘20.7.~11월) |
| ③ | 지방자치단체 | ▪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(‘20.7.~11월)
▪ 지방의회(11월) 및 행정안전부(12월) 제출 |
| ④ | 행정안전부 | ▪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(관계부처 협의)
(‘21.1.~3월) |
| ⑤ | 행정안전부 | ▪ 국무회의 보고(‘21.4월) |
-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
 -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,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